

제 1431 호  
1989. 3. 3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고  
편집인 : 공보관 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 ◎ 공문시행  
 물품관리건완소요조치 ..... 5  
 물품관리건완소요조치 ..... 6
- ◎ 조 례  
 제 2420 호 서울특별시도로정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7  
 제 2421 호 서울특별시부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 9
- ◎ 규 칙  
 제 2269 호 서울특별시도로정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10

(이면계속)

공										
문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㉔	예 규	
	제 510 호 서울특별시채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	10
㉕	훈 령	
	제 674 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국의여해규정중개정규정	12
㉖	교 육	
	제 2415 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19
	제 2416 호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0
	제 2417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기본재산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	21
	제 2418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표창조례중개정조례	21
	제 2419 호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22
㉗	교육규칙	
	제 320 호 식중독예방대책을위한서울시교원인사처리규칙등인부개정규칙	22
㉘	고 시	
	제 51 호 사망지정지의해제고시	23
	제 56 호 사망지정지의해제고시	24
	제 64 호 배합사료제조업체사료성분등록사항고시	25
	제 66 호 사망지정지의해제고시	25
	제 74 호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증추가고시	26
	제 7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고시	26
	제 84 호 쇠고기및돼지고기연동가격결정고시	26
㉙	공 고	
	제 5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28
	제 12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9
	제 12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9
	제 13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0
	제 13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1
	제 13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2
	제 137 호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허가	32
	제 13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3
	제 13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3

제 145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	34
제 146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	35
제 148호 2 중전기공 사업개조업 계획경처분 .....	35
제 154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	36
제 158호 지정도래인 지정확소공고 .....	37
제 159호 가스시설공사공사등록취소 .....	37
제 163호 2 중전기공사업계획처분 .....	37
제 166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	38
제 172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도로, 하수도 ) .....	38
제 177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도로, 하수도 ) .....	39
제 180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도로 ) .....	39
제 181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하수도 ) .....	40
제 182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하수도 ) .....	41
제 183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시설특지 ) .....	41
제 191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도로 ) .....	42
제 192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도로및하수도 ) .....	43
제 193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도로및하수도 ) .....	44
제 195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고 ( 도로및하수도 ) .....	44
제 197호 도시계획안공고 .....	46
◎ 사업소고시	
제 3 호하천정용허가기간연장허가 .....	47
◎ 사업소공고	
제 1 호회계과계공무원직업인등록탈퇴기공고 .....	47
◎ 구고시	
제 8 호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허가 .....	48
제 9 호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	48
제 12호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허가 .....	49
제 1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50
제 23호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	50
◎ 구공고	
제 1호 도시계획사업 ( 시장 ) 부분시행공람공고 .....	51
제 7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시행인가공고 .....	52

제 8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시행인가를 위한 공고 .....	53
제 10 호 공산품 불합격 상품 판매 및 진열 금지 공고 .....	53
제 12 호 관인개각 승인 공고 .....	54
제 17 호 도시계획사업 ( 시장 ) 공사 완료 .....	55
제 34 호 관인개각 승인 공고 .....	55

◎ 사 령

공 문 시 행

“관 인 생 략”

을 특 별 시

세무 01754-45 (731-6661) 89. 2.20

수 신 : 받은곳 강조 1년

제 목 : 물품관리전환 소요조치

- 1. 우리시 세무지도과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의 관리전환 소요의  
부담 조회하나 희망부서에서는 '89.3.15 까지 요청하기 바라며,
- 2. 의 기일까지 전환 요청이 없을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음.

종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취득년월일	상 태	물품소재지
책 상	4 중권수	과	3	'82.12.31	중고, 요청비	세무지도과
의 자	4 중철제	자	3	.	.	.

서 울 특 별 시 장

세무지도과장 전결

수신처 : 서과 1-79, 서구 1-22, 서보 1-22, 서사 1-59, 서소 1-10, 중립전설본부

서울특별시

공원 01750-76

(731-6411)

'89. 2.23.

수신: 시산하전기관

제목: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1. 서울시 공원과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의 관리전환 소요 여부를 조회하니 귀당부서에서는 '89.3.15 까지 요청하기 바람.
2. 위 기일까지 전환 요청이 없을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음.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물품상태	비고
책상	철제(4B)	각	3	체품	
의자	철제(3B)	각	3		

끝.

서울특별시

공원과장 전결

**조 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고 권 ④

◎ 서울특별시조례 제2420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 정 조 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의 2 (소액부징수)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를 제 9 조로 하고,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 조 (징수교부금) ① 구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구역에 교부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율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남아있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별표]

구	분	점 용 료
1.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과 유사한 공작물을 위한 점용	인근의 토지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이하 "점용면적가격"이라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전주인 경우에는 1주당

구 분	점 용 료
	단주는 500 원, H형은 800 원, 철탑은 1천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3
3. 키크랍·광고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10. 다만, 일시적인 광고막 등 점용면적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상당하는 점용면적가격의 100의 3으로 한다.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10. 다만, 이들의 진출입시설을 위한 공동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8
6. 지하도, 지하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10. 다만, 기존주택에 부설된 지하실로서 당해 지하실의 설치후 도로의 지하로 된 경우에는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7. 도로인접지역에서 각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등의 적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20
9. 돌출감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도로상의 공간점용	점용면적가격의 100분의 6



구 분	점 용 료
<p>9. 차광막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p> <p>10. 제 1 호 내지 제 9 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p>	<p>점용면적가격의 100 분의 5</p> <p>점용면적가격의 100 분의 3. 다만, 주택의 경우 및 지하도등이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면적가격 또는 표시면적에 상당하는 점용면적가격의 100 분의 3 으로 한다.</p>
<p><b>* 비 고</b></p> <p>가. 제 1 호의 점용에는 우편함 공중 전화박스등을 위한 도로의 점용을 포함하며, 전주에는 통신전주를 포함한다.</p> <p>나. 제 3 호의 점용에는 일시적인 광고막·아쉬식공작물 또는 노상입간판등을 위한 도로의 점용이 포함된다.</p> <p>다. 제 10 호의 점용에는 노걸·지하상점·각종 공작물·건축물·육교 및 식물재배를 위한 도로의 점용이 포함된다.</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이다.</p> <p>1989 년 2 월 28 일</p> <p>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p>	<p><b>◎ 서울특별시조례제 2421 호</b></p> <p>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2) 구청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일반회계중</p> <p>고용직 정원 "1,376"을 "6,444"로 하고, 정원내용에 "방법원 4,468"을 신설하며,</p> <p>합계정원 "10,867"을 "15,335"로 한다.</p> <p>부 리</p> <p>이 조례는 1989 년 3 월 1일부터 적용한다.</p>

**규 칙**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서울특별시규칙 제 2269 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1 항 단서중 “ 3년 ”을 “ 10년 ”으로 한다.

제 16 조중 “ 지방자치법 제 130 조 ”를 “ 지방자치법 제 131 조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 규**

◎서울특별시 예규 제 510 호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9.2.9

서울특별시장

제 11 조 (입찰무효 및 유찰) 제 1항 5 호중 “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때 다만,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독입찰이나 단독견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때 ”로 한다.

제 14 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 2 항 제 1 호중 “ 매각대금 일시불기간은 60 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할 때에는 계약액의 20 %를 공제한 금액을 토지대금으로 징수하고 30 일경과 60 일까지 계약액 전액을 징수하며 60 일 경과시는 금융단이 협정한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가산징수하고 ”를

<p>“매각대금 일시불기간은 60일을 경과하지 못한다. 다만, 60일 경과시는 금융단이 협정한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가산징수하고”로 한다. 부칙 제3조(매각특례) 관한 경과</p>	<p>도치) 제8조제1항 단서중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된 2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1988.12.31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를 “1990.12.31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로 한다.</p>
---	---

신 구 조 문 대 조 단

현	행	개	정	안	이	유
제 11 조 (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각호	.....				
의 1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은 이		.....				
를 무효로 한다.		.....				
5. 기타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				
때 다만,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단독입	삭	계				
찰이나 단독견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계				
제 14 조 (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				
② 일시불토지의 납부기간 및 연체이자		.....				
1. 매각대금 일시불기간은 60일을 경		.....				
과하지 못한다. 다만, 계약일로 부터	삭	계				
30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때에	삭	계				
는 계약액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삭	계				
토지 대금으로 징수하고 30일 경과	삭	계				
60일까지는 계약액 전액을 징수하며	삭	계				
60일 경과시는 금융단이 협정한 일	.....					
반대출 연체이율을 가산 징수하고 6	.....					
개월경과시에는 해약할수 있다.	.....					
부칙 제3조(매각특례) 관한 경과조치)		.....				
제 8 조 제 1 항 단서중 사유건물이 점유		.....				
된 200㎡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		.....				
에게 1988.12.31 까지 매각하는 경우		.....				
		1990.12.31 까지 매				
		각하는 경우				

부 칙

- 1) (시행일) 이규정은 1989.2.9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의여행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9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고건

◎서울특별시 훈령 제 674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국의여행규정중 개정규정 (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 조 본문을 제 1 항으로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임직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임원"으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같은 조의 1 에 해당하는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

일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 8 조 제 3 항중 "재적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를 "재적위원과반수의 서명을 받아"로 한다.

제 9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를 삭제하고 제 4 호 및 제 5 호를 제 2 호 및 제 3 호로 하며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집사위원회에서 의결된자에 대하여 공무원국외여행을 명한다. 다만, 4 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집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국외여행을 명한다.

제 17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 3 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공무원국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행자는 귀국후 20 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시정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 23 조 제 1 항중 "별지 제 4 호서식"을 "별지 제 3 호서식"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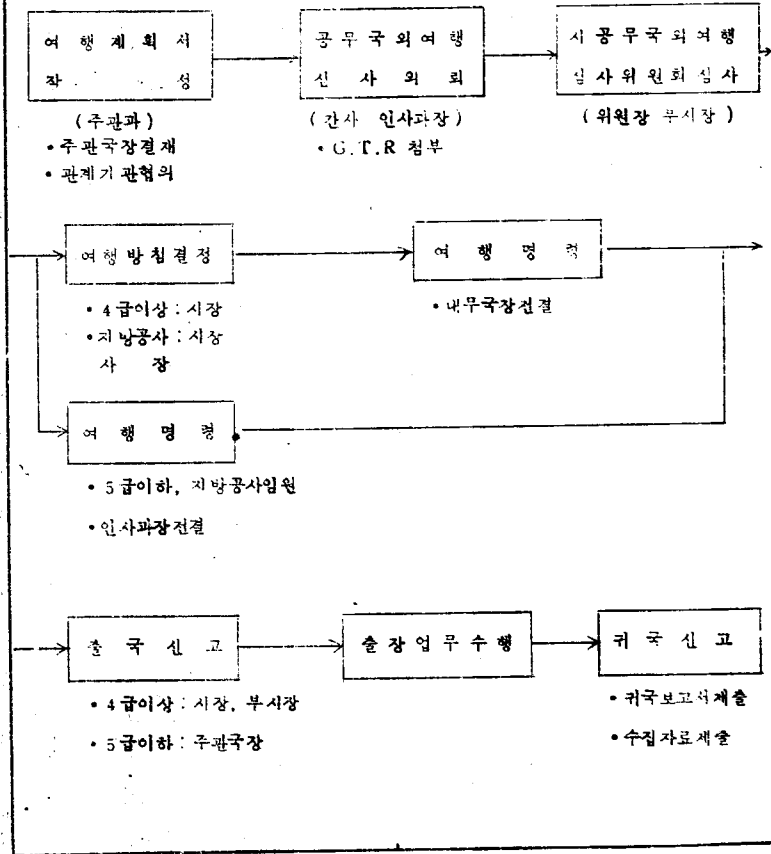
(별표 1) 및 (별지 제 1 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 3 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 4 호서식)을 (별지 제 3 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무국의 여행 허가 절차



(별지 제 1 호 서식)

공 무 구 의 여 행 계 획 서

1. 여행 계획 요약

여행 목적				
여행 동 기 및 배 경				
여행 기간	~ ( 일간 )			
여행 국	( )			
여행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직 급			
	여행 경비	\$	\$	\$
여행 경비 부담 기관				
기 타				

\* 작성요령

1. 여행국의 ( )는 경유국(항공권이용에 따른 단순경유국을 포함)을 기재
2. 소속은 과까지 기재
3. 직급은 공무원임용령 제3 조에 의한 명칭을 기재  
(예: 행정사무관·토목기좌등)
4. 4 길 초과경우 별지작성

2. 여행세부계획

가. 여행목적

1)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동기 및 배경

2) 여행하여 수행하는 세부내용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업무)

3) 여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나. 여행일정					
일 자	출 발 지	도 착 지	방 문 기 관	업 무 수 령 내 용	접 촉 예 정 인 물
	서 울				
		서 울			



다. 요령정비								
성 명	계	장 품 목	계 제 비			준 비 금	보 육 리	기 타
			인 비	삭 비	수 립 비			
	₩	₩	₩ × 인 = ₩	₩ × 인 = ₩	₩ × 인 = ₩	₩	₩	₩

3. 자료수집계획

여행계획

- 소속기관 :
- 여행자 :
- 여행목적 :
- 여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여행국 :
- 방문기관 :

자료수집계획

- 
- 
- 

※ 최근 3년이내의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제출여부

- 귀국보고서 (                    )      • 자 료 (                    )

년      월      일

시정개발담당관    작성자

④

시정개발담당관    확인자

④

교 율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9. 2.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는 교육법 제 8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 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 과 같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2415 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시립학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학군별	소 속 지 역	
	구 별	해 당 지 역
6	서대문구	냉천동, 천연동, 우천동, 현저동, 홍재동, 남가좌동, 홍은동, 영천동, 북가좌동
7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진역 진역 진역 진역
8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동, 잠원동,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원저동, 염곡동, 신원동, 반포동중 행정동인 반포제 1,2,3 동 진역 진역 진역
9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진역 진역 방배동, 반포동중 행정동인 반포본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설정에관한 조례를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 2416 호  서울특별시교육청설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조례	
1989. 3. 20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 제 2 호 제 1 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학군별 소속지역 일람표			
학군별	구	소속지역	지역
I	성북구	신역	노원동, 동부동, 관악동, 관정동, 관훈동, 건국동, 건국동, 운니동, 과동동, 낙원동, 석산동, 석운동, 관월동, 인사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팔각동, 사간동, 삼현동, 가회동, 개동, 제동, 원석동, 돈의동, 묘동, 훈성동, 봉익동, 관수동, 상사동, 재기동, 안희동, 연희동, 원남동, 효제동, 초산동, 이화동, 연전동, 동산동, 예화동, 승인동, 향신동, 명륜동 1가 2가, 3가, 4가, 삼척동
	서대문구	백천동, 적선동, 옥천동, 선서동, 홍제동, 남가좌동, 홍은동, 영천동, 보가좌동	
II	영등포구	신역	강서구, 신역, 양천구, 신역, 구로구, 신역
	강서구	신역	
	양천구	신역	
	구로구	신역	
III	서초구	서초동, 잠원동,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원지동, 염곡동, 신원동, 반포동중 행정동인 반포 1, 2, 3 동	김동구, 신역, 송파구, 신역, 강남구, 신역
	김동구	신역	
	송파구	신역	
	강남구	신역	

학군별	소 속 지 역		
	구 별	해 당 지 역	
9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전역 전역 방배동, 반포동중 행정동인 반포본동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2. 20</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p> <p><b>◎서울특별시조례제 2417 호</b></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기본재산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p> <p>서울특별시조례 제 201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p>		<p>시교육위원회표창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2. 20</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p> <p><b>◎서울특별시조례제 2418 호</b></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표창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 4 호서식) 중 본적란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p>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물 이에 공포한다.

1989. 2.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서울특별시조례 제 2419 호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1호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교육규칙

서식중 본적란삭제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인사사무처리규칙등의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2.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교육규칙 제 330 호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인사사무처리규칙등의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1호서식), (별지 제 8호서식), (별지 제 12-1호서식), (별지 제 12-2호서식), (별지 제 19호서식), (별지 제 20호서식), (별지 제 39호서식) 및 (별지 제 41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표창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상 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1호서식)과 (별지 제 2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중학교입학자격검정교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 1호내지 제 6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남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51 호

사방 지정지의 해제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1

번지의 30 필지의 사방 지정지를 사방사업법 제 20 조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 조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89. 2.

서울특별시장

사방 지정지 해제대상조사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년월일	비고
용산구한남동산 1-1	임야	22,572	22,572	22,572	54. 4. 3	
" 산 1-2	"	1,683	1,683	1,683	"	
" 산 8-1	"	76,853	76,853	76,853	"	
" 산 9-1	"	1,884	1,884	1,884	"	
" 산 4	"	145,533.3	145,533.3	145,533.3	"	
" "	"	356,706.9	271,260	271,260	"	
용산구후암동 4.7-1	"	208.3	208.3	208.3	68. 5. 27	
" -3	"	46.3	46.3	46.3	"	
" -4	"	44	44	44	68. 5. 27	
" -5	"	39.7	39.7	39.7	"	
" -6	"	7.9	7.9	7.9	"	
" -7	"	77	77	77	"	
" -8	"	43	43	43	"	
" -9	"	8.9	8.9	8.9	"	
" -10	"	53.9	53.9	53.9	"	
" -11	"	52.9	52.9	52.9	"	
" -12	"	166.3	166.3	166.3	"	
" -13	"	49.6	49.6	49.6	"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년월일	비 고
용산구 주암동 407-14	임야	52.9	52.9	52.9	68. 5.27	
" -15	"	185.1	185.1	185.1	"	
" -16	"	153.1	153.1	153.1	"	
" -17	"	33	33	33	"	
" -18	"	96.8	96.8	96.8	"	
" -19	"	62.8	62.8	62.8	"	
" -20	"	92.6	92.6	92.6	"	
" -21	"	59.5	59.5	59.5	"	
" -22	"	181.8	181.8	181.8	"	
" -23	"	39.7	39.7	39.7	"	
" -24	"	9.3	9.3	9.3	"	
" -25	"	35.4	35.4	35.4	"	
" -26	"	20.8	20.8	20.8	"	

◎ 서울특별시고시제 56 호

사방지정지의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4-64  
외 11필지 사방지정지를 사방사업법  
제 20조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 조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이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1989. 2.

서울특별시 장

사방지정지 해제대상조서

소 재 지	지 목	기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년월일	비 고
신당동 산 34-64	임야	892	892	892	54. 4. 3	
" 34-66	"	595	595	595	"	
" 34-67	"	595	595	595	"	
" 34-68	"	595	595	595	"	
" 37-4	"	1,685	1,685	1,685	"	
" 37-9	"	3,371	3,371	3,371	"	



소재지	거목	자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년월일	비고
신당동 산 37-15	임야	34,413	34,413	34,413	54. 4. 3	
" 37-26	"	14,677	14,677	14,677	"	
" 37-29	"	14,479	14,479	14,479	"	
" 37-35	"	20,826	20,826	20,826	"	
" 34-88	"	16,363	16,363	16,363	55. 5. 4	
" 34-104	"	23,305	23,305	23,305	"	
계		131,796	131,796	131,796		

◎ 서울특별시고시제 64 호

배합사료제조업체사료성분등록사항고시(안)

사료관리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배합사료 제조업체 사료성분등록 사항을 필하였거 동법제 22 조

가. 사료성분 등록내용

제 2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2. 15.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제조업체명	비고
14-1-23	강서구등촌동 631-5	김종오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양축공 배합사료 착유 4호 (비유량 20kg 이상)

◎ 서울특별시고시제 66 호

사방지정지해제고시

1. 사방사업법 제 20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 조에 의거 해제 고시합니다.

가. 사방지정지 해제조사

(강남구 세곡동 산 49 외 56 필지)

1989. . .

서울특별시장

<p><b>◎ 서울특별시고시제 74 호</b></p> <p>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증추가고시</p> <p>서울특별시 고시제 45호(89.2.2) "주유소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2. 22.</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2. 허가기준 나. "지역제한" 중 6)을 가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국회의사당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16 광장에 이르는 대지내에서는 국회의사투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고시는 1989년 2월 11부터 적용한다.</p> <p>3) 사업의 규모</p>		<p><b>◎ 서울특별시고시제 76 호</b></p> <p>도시계획사업 (도로) 고시</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855 호(88.10.25) 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24조 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1) 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5                  ○ 방화동 652-598                  ○ 화곡동 985-16~985-23                  ○ 방화동 584-1~589-9</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도시계획사업 (도로)</p>			
사	업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비	고
		당	초	변	경
	공항공고주변포장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20 m, L = 534 m		변경없음	
	화곡동 985 주변도로개설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6 m, L = 90 m		"	
	방화동 584 주변도로개설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10 m, L = 150 m		"	
4) 사업의시행자 (변경없음) :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장		88.10 ~ 89.12.31			

<p>6)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p> <p>7) 토지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 및 성명 : 별항</p> <p>8) 인가조서 : 별첨인가조서 (생략)</p> <p>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합니다.</p>	<p><b>인 가 증 (안)</b></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p> <p>1. 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화동 552-598</li> <li>○ 화곡동 985-16-985-23</li> <li>○ 방화동 584-1-589-9</li> </ul>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도시계획사업 (도로)</p>																		
<p>3. 사업의 규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사 업 명</th> <th colspan="2">사업의 종류 및 규모</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당 소</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공항고교주변모장공사</td> <td>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20 m, L = 534 m</td> <td>변경없음</td> <td></td> </tr> <tr> <td>화곡동 985 주변도로개설공사</td> <td>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6 m, L = 90 m</td> <td>"</td> <td></td> </tr> <tr> <td>방화동 584 주변도로개설공사</td> <td>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10 m, L = 150 m</td> <td>"</td> <td></td> </tr> </tbody> </table>	사 업 명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비 고	당 소	변 경	공항고교주변모장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20 m, L = 534 m	변경없음		화곡동 985 주변도로개설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6 m, L = 90 m	"		방화동 584 주변도로개설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10 m, L = 150 m	"		
사 업 명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비 고														
	당 소	변 경																	
공항고교주변모장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20 m, L = 534 m	변경없음																	
화곡동 985 주변도로개설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6 m, L = 90 m	"																	
방화동 584 주변도로개설공사	도시 계획 사업 (도로) B = 10 m, L = 150 m	"																	
<p>4. 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청</p> <p>5. 사업기간 (변경없음) : 88. 10 ~ 89. 12. 31</p> <p>6.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p> <p>7. 토지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p>	<p>계인 주소 및 성명 : 별항</p> <p>8. 인가내용 : 별첨 인가조서 (생략)</p> <p>위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함.</p> <p style="text-align: right;">1989. 2. 서울특별시청</p>																		

◎서울특별시고시제 84 호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제도에 관한 규정(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88. 9. 14)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89. 2. 27

서울특별시장

- 1. 쇠고기 연동고시가격 (정육 100g 당) 1,010 원
- 2. 돼지고기 연동고시가격 (정육 100g 당) 270 원
- 3. 시행일: 1989.3.2. 부터

공 고

◎서울특별시고시제 5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92 호('79. 2. 28)로 도시계획결정및 지적고시 된 "올림픽대로 하단도로개설공사"

와 관련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 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가. 공람장소: 송파구청토목과 (전화 410-3405 ~ 8)

나. 공람기간: '89.1.' '89.2

1989. 1.

서울특별시장

- 공 램 개 요 -

- 1. 사업명: 올림픽대로 하단도로개설 공사
- 2. 사업시행지: 풍납동 301-7-301-11
-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 = 15 m, L = 90 m
- 4.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2 년
- 5.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 6. 거퇴: 의견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 바람.

◎서울특별시고시제 126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공고 제 9 호 ('67.1.21)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도로)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27 조의 2

가. 사업개요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토목과 및 수택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착공	준공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번 1 동 387-458 번지 도로개설 공사	도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B= 6m L= 40m	'89. 3	'89. 12.30	건공제 9 호 ('67.1.21)	건공제 9 호 ('67.1.21)

- 나. 사업시행사: 서울특별시
- 다.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소재: 별첨 건물소재, 생략
-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
-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 바. 공람장소: 도봉구청토목과 및 수택과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토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9.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 12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성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

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

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영역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미아동 49-168 호외 25필지	도시계획사업 (도로) 미아동 49-87간 도로개설	B=15m L=170m	인가일로부터 '90.12월까지	건고시제 738호 ('87.12.24)	서울고시 162호 ('77. 5.28)
수유동 540-87 외 2필지	인수국·장학교 진입로포장공사	B=5- 0.5m L=110m	인가일로부터 '89.12월까지	서울고시제 3호 ('69. 1.18)	서울고시제 3호 ('69. 1.18)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보지 (물건)  
 초서: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 생략  
 다.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도봉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 (903-1627)에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1989.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3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 호 ('74.  
 3.15)로 도시계획결정및 지적고시된  
 마천동 140-18-141-20 간 도로개설공사  
 와 관련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 합  
 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가. 공람장소: 송파구청토목과  
(전화 410-3405-8)

나. 공람기간: 1989.2-1989.2

1989. 2.

서울특별시

- 공 람 개 요 -

1. 송파구 마천동 140-18~140-20 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 마천동 140-18~141-20

3. 사업규모: 마천동 B = 6 m.  
L = 130 m

4.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1년

5.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6.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의 제출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132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729('88.9.10) 호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2('88.11.15) 호로 지적승인된 고덕천 개수공사의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2의2항및 동법시행령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방에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토목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3.9

서울특별시

1. 사업명: 고덕천 개수공사

2. 사업시행지: 강동구 하일동 244-251

3. 사업규모: B=15m, L=95m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1년간

5.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6.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하일동 254-1	답	218	성동구 홍익동 147	정철외 1인
2	253-1	압중저	286	강남구 신사동 144-2	한희울
3	252-2	답	627	도봉구 미아동 산 38	이승민
4	251-2	"	19	도봉구 미아동 산 38	이승민
5	244-7	전	50	동대문구 장안동시영(아) 9/307	이준재외 1인

7.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및 문의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13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768 호 ('64. 1. 24)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51- 4 호의 1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인가에 관해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 자를 대하여는 이공고로 관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2. 11.

서울특별시장

- 공 랐 요 지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51- 4 호의 1 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동대문구 이문동 349 번지 도로정비공사

3. 사업규모

폭 8 m, 길이 39 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1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별첨조서 (동대문구청비치)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3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별첨조서 (동대문구청비치)
8. 공람장소: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9.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토목과의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37 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변경허가

비료관리법 제 11 조 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 하였기 다음안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2. 10.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제 1-2 호
2. 허가년월일: 1989년 2월 10일
3. 사업장소재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92
4. 상호: 제일제당주식회사



5. 변경허가사항						
구분	대표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전	손영희	강남구반포 1245 반포애 95-107호	310915-1041717			
변경후	안시환	서로구서초동산 64-7	100610-1696210			
<p>◎서울특별시공고제 138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식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p> <p>2.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가. 사업개요</p>			<p>개별통지 할 것이나 기수권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목과 및 건설관리과와 주택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내에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989. 2. . 서울특별시 장</p>			
사업명칭	사업시행지	규모	착공	준공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미야 6 동 1264-1268 번지간 도 로개설공사	미야 6 동 1264 의 41-1268 의 204	B=6m L=270m	89. 2.	90.12	서고시 165호 83.2.24	서고시 105호 83.2.24
<p>나. 공사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주소 : 별첨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 : 생략 마.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목과 및 건설관리과, 주택과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p>			<p>토목과에 문의 바랍니다.</p> <p>◎서울특별시공고제 139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식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p>			

별공 시행도령 도시계획법 제 25 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 27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의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개요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람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수유동 408-17 외 36필지	도로계획사업 (도로) 수유동408-412 간 도로포장공사	B=6m L=140m	89년인가일로부터 90.12월까지	서고시 89호 (72.6.30)	서고시 89호 (72.6.30)
쌍문동493-18호	쌍문동 493-12 도로개설공사	B=6m L=20m	인가일로부터 89.6월까지	서고시 89호 (72.6.30)	서고시 89호 (72.6.30)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조서: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정면도: 생략  
 바.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기타 상의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903-16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4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서울시 고시 3호(69.1.18) 및 서울시 고시 196호(75.12.1)로 결정(도로) 및 지적고시된 원호동 163-169 간 도로개설 공사를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로 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1989. 2. .

서울특별시청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89.2 ~ 89.2

1989. 2. .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1. 사업명: 천호동 163-169 간의 2개소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 천호동 163 의 14-169 의 5 호의 2 개소
3. 사업규모:
  - B = 8m L = 40 m ) 콘크리트포장=15.8a
  - B = 6m L = 210 m
  - 하 수 도 D = 600 mm L = 200 m
  - " D = 450 mm L = 50 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1년
6. 기타 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문의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146 호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호 (69.1.18) 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천호동 191-201간 도로개설 도시계획

(도로)사업 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2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견은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89.2. ~ 2

1989. 2. .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1. 사업명: 천호동 191-201 간 도로개설공사
2. 구 간: 천호동 191-195 의 14 간
3. 사업시행규모: B = 8 m, L = 92 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2년
6. 기타 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문의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148 호

2 중전기공사 제조업체 행정처분 국제징수법 제 7 조 및 서울특별시

국세채납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전기공사면허를 취소하였거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9. 2. .  
서울특별시 장

- 다 음 -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행 정 처 분	사 유
2-249	대화전기상사	중구오장동 139-10	이창수	면허취소(89.2.10)	국세채납

◎서울특별시공고제 15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결정, 지속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져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 시행령 제 27 조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가. 사업개요

는 개발용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제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결정고시일자	지척고시일자
미아동 95-3 호 외 28 필지	도시계획사업 (도로) 미아동 66- 번동 287 간 도로개설	B= 20 m L= 250m	인가일로부터 2년간	건고시 177 호 (62.12.8)	건고시 177 호 (62.12.8)

-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장
-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주소: 생략
-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
- 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 바. 공람장소: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설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 (903-1627)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9. 2. .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58 호**

지정도매인 지정 취소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63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도매인 지정을 취소함을 공고한다.

1989. 2. .  
서울특별시 장

1. 지정도매인명: 강동국제청과㈜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3. 지정취소 연월일: 1989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공고제 159 호**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제 12 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역 등록된 다음 가스시설 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니 이를 공고합니다.

1989. 2. 15.  
서울특별시 장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취 소 사 유
86-90	㈜아경플랜트 서비스	강남구 역삼동 837-15	문도경	등록 기준 미달
87-113	한양기공㈜	강남구 삼성동 1-4	조관희	"

**◎서울특별시공고제 163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제 2 항제 2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2. 18.  
서울특별시 장

- 다 음 -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250	동원전기상사	김석환	마포구 합정동 383-26	전기공사업법 제 7 조제 2 항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 30일 ('89.2.18 ~ '89.3.20)

◎서울특별시 공고 제166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인가 토목 30350-1-19 호로 설치 인가 및 주택 30320-87('89.1.24)호 도로개설에 따른 공공하수도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면은 동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합니다.

1989. 2.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17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 호('88.1.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서울시 고시 제 562 호('88.6.28)로 지적승인된 사당 2.4구역 진입로 개설공사의 5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실시계획인가고져 도시계획법 제25조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련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동작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89. . .-'89. . .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지적승인
사당3동 323-1-167외 39	사당 2.4구역 진입로 개설공사	B=6-8~1b-20M L=740M 하수도(D=500-800) L=1500M	서울특별시	'89년 가일 31	사고 제 52 호('88.1.28)	제 562 호('88.6.28)

◎서울특별시 공고 제17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338 호(78.8.3),  
서울시 고시 제 409 호(78.8.14)로  
도시계획실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명일동 삼익(아)주변의 1개소 도  
로개설 공사를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시  
행령 제 27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 자에게 대  
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89.2.4~'89.3.6(14일간)

1989. 2. 21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명일동 삼익(아)주변의  
1개소 도로 개설 공사
2. 사업시행지:천호동 453-6~453-3 간
3. 사업규모: B=8M L=55M

콘크리트포장 A=4.3㉔하  
수도 D=800% L=50M

4.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인가일  
로부터 2년
6. 기타사항:의견 및 상세한 사항  
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문의바람.

◎서울특별시 공고 제18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승인한 다  
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져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시행령 제 27 조 2 규정  
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  
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 자에 대해서  
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있  
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989. 2. 2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2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인가에 따른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6 호('86.5.24)로 지적고시된 안양천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상하수국 하수과와 관할구청의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1989. 2. 2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마목동 74 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하수도)하수처리장
-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4) 시행면적 : 628,575㎡
- 5) 시행기간 : 인가일로 부터 '93.12

6) 기타 :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 서울특별시 상하수국 하수과로 문의 또는 제출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3 호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실시계획인가에 따른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3 호('84.6.5)호 지적고시된 안양 하수처리장 시설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상하수국 하수과와 관할구청의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1989. 2. 2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106 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4) 시행면적 : 45,000㎡
- 5) 시행기간 : 인가일로 부터 '93.12
- 6) 기타 :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 서울특별시 상하수국 하수과로 문의 또는 제출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아래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에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토지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9. 2.

서울특별시청

가.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변경	지적승인	사업명	사업의종류및규모	비고
전고제 82 호 (76.6.11)	서고제 22 호 (76.8.16)	공항고교주변보 장공사	도시계획도로 B=20M L=650M	
서고제 171 호 (72.11.18)	서고제 171 호 (72.11.18)	공항동 55-34 간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B=8-10M L=300M	
서고제 196 호 (78.8.16)	서고제 196 호 (78.8.16)	방화동 260 번지 일대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B=8M L=350M	
서고제 109 호 (76.7.19)	서고제 308 호 (78.6.16)	국제예식장 - 방 화삼거리간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 B=20 L=950M	
전고제 198 호 (71.4.7)	전고제 21 호 (72.9.11)	양천길 확장공 사	도시계획도로 B=30 L=200M	



◎서울특별시공고제 19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 호 ( 74.8.6 )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 도로 및 하수도 ) 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989. 2. .

서울특별시장

공 사 개 요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28-83 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 도로 및 하수도 ) 가리봉동 28-83 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12-6 m, L=130 m 하수도 B= 450 mm, L= 65 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 구로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90.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생략)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95 호

도시 계획 사업 ( 도로 )  
실시계획 공람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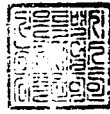


1. 서울시고시 제 3 호 ( 69.1.18 )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장위동 112-4~33-30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제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 토목과·건설관리과

<p>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p> <p style="text-align: center;">1989. 2. . 서울특별시</p> <p>1) 사업시행지: 장위동 112-4-33-30 간</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장위동 112-4~33-30 간 도로확장공사</p> <p>3) 사업의규모: B = 6 m, L = 80 m 도로확장</p> <p>4) 사업시행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공: 인가일로부터 30 일 이내</li> <li>○ 준공: '89.12.30</li> </ul> <p>6)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아래</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의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아래</p> <p>8) 기타사항: 의견 및 상해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 종류및내용
						관계인 주소성명		
1	장위동 33-47	대		4㎡	대	장위동 33-5	최덕영	
2	" 33-48	대		30	대	" 33-6	최건영	
3	" 115-87	대		34	대	길음동 602-7	장승락	
4	" -86	대		7	대	장위동 33	박경자	
5	" -85	대		53	대	종로구홍지동 52-1	도일용	
6	" 113-1	대		64	대	장위동 113	박금애 외 2 인	
7	" 112-9	대		101	대	중구충무로 3 가 50	재단법인 구립재단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구 격	수 량	실 계 용 상 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소유권이 의권리의 종류및내용
						관 제 인 주 소 성 명		
1	잠위동 33-6	주 택	복 세 멘 와 세 멘 부 리 합	12 ㎡	주 택	잠위동 33-6	최건영	
2	" 112-1	"	세 멘 부 리 합	110	"	서대문구충정로 3가50	재단법인 구립재단	
3	" 113	"	세 멘 부 리 합	44	"	잠위동 113	박급배	
4	" 115-72	주 택 및 정 포	연 스 라 프	2	주 택 및 정 포	정릉동 16-341	장승락	
<p>◎서울특별시공고제 197 호</p> <p>도 시 계 획 안 공 고</p> <p>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 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p>						<p>보입니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 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기간: '89.2.28~'89.3.14 나. 공람장소: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450-1385 호)</p> <p>1989. 2.28 서울특별시 장</p>		
구 분	도시계획안	위	치	구	도	비 고		
신 설	주 차 장	광장동	산 29 일대		13,317 ㎡			
변 경	도 로	마장동	781 의 12-		B = 25 미터			
		마장동	777 의 2 간		L = 146 미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사 업 소 고 시</b> </div>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3 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1989년 2월 23 일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아 래							
허가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 용 목적	점용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89.2.23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0번지선 (한강)	하천	817.5㎡	유선장설치	1989.2.20 1990.2.20	서울특별시 중대경흥산로구 관훈동 192-18	홍정식 대표 최정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사 업 소 공 고</b> </div>				규칙 제 11 호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 1989. 2. 13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공고제 1 호  회계관계공무원등복합폐기(안)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 7,8,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등록 및 폐기신고하고 동				1. 사용개시및폐기일자: 1989.2.13 2. 사용직인: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 경리관 지출원 3. 폐기직인: 분임경리관 분임지출원			
신 규 인 영			폐 기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경리관인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지출원인	공인명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분임경리관인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분임지출원인		

**구 고 시**

◎**구로구고시제 8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 변경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0 호 ( 85.11.22 ) 로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된 정희여자 상업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시행령 제 6 조,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서울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 5 조에 의거 동 사업 시행허가를 변경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 도시정비과 )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2. 4.  
구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0-42 외 8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시설 ( 학교 ) 사업
- 다. 사업시행 면적 : 5,549
- 라. 변경내용 : 준공기한연기  
- 당초 : 88.12.31.

- 변경 : 89.12.31

마.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구로구 구로동 390-42 외 8 필지 학교법인 문성학원 이사장 안상수

◎**중랑구고시제 9 호**

도시 계획사업 ( 소매시장 ) 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97 호 ( 76.11.8 ) 로 결정 무고시 제 386 호 ( 85.6.14 ) 로 도시계획시설 ( 시장 )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2 호 ( 86.7.4 ) 로 지적 승인된 다음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동법 시행령 제 6 조 및 서울시 조례 제 2126 호 ( 86.12.18 ) 권 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산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2. 4  
중랑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7-1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소매시장 ) 중화계일시장 신축 ( 계속 ) 공사



<p>다. 사업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화동 307-1</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261호 (84.5.12) 및 구로구 고시 제 103호 (1988.12.24) 로 시 행허가 및 변경허가한 도시계획사업 (시 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와 서울특별시 행 정권한 위임조례 제 5조에 의거 도시계 획사업 (시장)시행 변경허가 하였기 고 시합니다</p>		
<p>성명: 창화실업주 강신희</p>	<p>1989.2.14 구로구청장</p>		
<p>라. 사업시행규모</p> <p>1)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지하 2층 - 지상 5층</p> <p>2) 사업시행면적: 3,300㎡</p> <p>3) 건축면적: 1,531.89㎡</p> <p>4) 건축연면적: 12,244.43㎡</p>	<p>가. 사업시행지: 구로구시흥동 966번지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시장)시흥증양철재 종합상가</p> <p>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09번지 이진태 외 214인</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년월일</p> <p>1) 착수일: 1989. 3. 1</p> <p>2) 준공예정일: 1989.11.30</p>			
<p>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생략)</p>			
<p>◎구로구 고시제 12 호</p>			
<p>도시계획사업 (시장)시행 변경허가</p>			
<p>라. 사업시행 규모</p>			
<p>구 분</p>	<p>허가 면적 (㎡)</p>	<p>허가 변경 면적 (㎡)</p>	<p>비 고</p>
<p>대 지 면 적</p>	<p>35,864.2</p>	<p>37,981.90</p>	<p>증 2,117.7</p>
<p>건 축 면 적</p>	<p>10,724.94</p>	<p>11,343.51</p>	<p>증 618.57</p>
<p>건 축 연 면 적</p>	<p>28,859.76</p>	<p>31,393.98</p>	<p>증 2,534.22</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p> <p>1) 착공: '85.2</p> <p>2) 준공: '89.6.30.</p>	<p>성명: 별첨 (생략)</p> <p>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의 조서 지번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별첨 (생략)</p> <p>야. 사업계획도면 (생략)</p>		
<p>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 주소</p>			

<p><b>노원구고시제 15 호</b></p> <p>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2. 노원구청장</p>	<p>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p> <p>2. 사업주체: 중구 남대문로 3 가 110 한국은행 직원 주택조합 전문식의 4 개조합</p> <p>3. 사업시행 위치 및 면적 규모</p> <p>가. 위치: 노원구 중계동 210-5 의 12 필지</p> <p>나. 대지면적: 11,738 m<sup>2</sup></p> <p>다. 건축연면적: 33,705.8 m<sup>2</sup></p> <p>라. 규모: 아파트 12-15 층 313 세대 (상가 3 층 1 동 및 부대 부리시설)</p> <p>마. 사업시행기간: '89.2-'90.8</p>
---	--

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변경(이동), 폐지]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류	8 m	155 m	중계동 434-31	중계동 434-27	도로계획도로
변경	"	"	"	"	"	434-28	변경(이동)
기정	소로	2 류	8 m	69 m	" 434-27	" 210-5	폐지
변경	"	"	"	"	"	"	

<p><b>도봉구고시제 23 호</b></p> <p>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p> <p>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p>	<p style="text-align: right;">1989.2.10 도봉구청장</p> <p>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p> <p>2. 사업주체: 동익건설 박성배외 1인 및 한국주택은행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김상훈외 1개조합</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위 치	도봉구수유동산 68-10 호의 3 필지	도봉구수유동산 60번지의 3 필지
대 지 면 적	18,734 m <sup>2</sup>	25,494 m <sup>2</sup>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건축면적	76,748.37 m <sup>2</sup>	67,721.03 m <sup>2</sup>
구 분 모	아파트 8-14층 5동 324세대 (상가 2층 1동 및 부대부리 시설)	아파트 5-15층 7동 574세대 립주택 3층 1동 12세대 (상가 3층 1동 및 부대부리 시설)

4. 사업시행기간: '89.2 ~ '90.0

5.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구분	등급	구분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	135	동작구수유동299-5	동작구수유동310-9	
변경	"	"	"	142	"	"	일부구간변경

**구 공 고**

◎ 동작구공고제 1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부분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74 호 (86.5.1) 시  
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시장) 에 대하  
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산업과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  
일간 보이고자하니 의견이 있을시는 의  
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89. 1. 28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동작구노량진동312-6 의 2  
필지 ( 51,59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시장) 부분시행 -삼거리  
시장

다. 사업규모

-대지면적: 3,033 m<sup>2</sup>

-건축제회: 건축면적-1,396.38 m<sup>2</sup>

건축면적- 8,281.98 m<sup>2</sup>

라. 사업시행자 주소명칭

-강서구 화곡동 1023 번지 준영실업(주)

대표 채선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 수 일: '89 년 월 일로

부터



- 준공예정일: '89.10.

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동작구청 산업과에 비치			사.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아. 공고기간: 1989.1.28 ~ 2.11			
소유자	소재지	주소	대지평수	건물평수	비고	
고광남	노랑진동 309-4	경동구여의도동 광장아파트 0-807	54㎡	1층: 74㎡ 2층: 82㎡		
◎ 중구공고제 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66 호 (88.3.28) 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77 호 (88.4.15)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된 총무로 5가 79-2호에서 목적동 31-21 호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인가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의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조서			부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 2. . 중 구 청 장 공 란 요 지 가. 사업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사업개요 ○사업의명칭: 총무로 5가 55-31 번 지간 도로개설공사 ○개 요 : B=6m, L=8m로 확장 L=120 m 다.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라. 수용할 토지(건물)주소 도면: 생략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총무로5가 79-10	대	41.6	율지 5가 19-29	계산산업㈜		
목적동1-40	"	59.4	"	"		
" 1-39	"	136.8	목적동 1-23	동삼기업㈜	85.10.31 동방생명보험㈜	근지당 실정

진 물 조 사							
소재지	구 조 용 도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과의 권리면적	비 고	
			주 소	성 명			
충무로 5가 79-10	세워보리 스레트	근린생활 시설(점포)	6.7	충지로 5가 19-29	제산산업 ㈜	미등기	
육정동 1-39	철근콘크리 트스라브	병 원 수위실	2.2	육정동 1-23	동삼기업 ㈜	85.10.31 등락 근저당 생명보험주 설 정	
육정동 1-39	"	병 원 세탁실	19.8	"	"	"	

<p>◎중구공고제 8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 제 432 호('63. 7.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성 및 도 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인가 이전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 니다.</p> <p>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 인에제능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 명자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합 니다.</p> <p>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 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 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p>	<p>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신청에 따 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2. 중 구 청 장</p> <p>◎중랑구공고제 10 호</p> <p>공산품품질검사기관매입진열금지공고</p> <p>공산품품질관리법 제 4 조 2 항의 규 정에 의거 품질검사결과 불량적상품 에 대하여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진 열, 보관, 운반의 금지물 동법시행령 제 3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2. 10 중 랑 구 청 장</p>
---	--

다 음						
상 품 명 및 장	규 격	판 매 업 소	소 재 지	금 지 사 유	금 지 유 형	금 지 년 월 일
합성수지자 (봉산)	3% 이상	현대문구 (최태철)	덕목 369 -22	품질검사 불합격	판매 및 판매물 위한 진열, 보관, 운반금지	'89.2.10
합성수지자 (삼화양행)	1.5% 이상	"	"	"	"	"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p>◎강남구공고제 12 호</p> <p>관 인 개 각 승 인</p> <p>관인 규정 제 8 조 및 강남구 관인 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 및</p>				<p>제인된 관인을 관인규정 제 9 조 및 강남구 관인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989. 1. 2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p>		
신 인 영			구 인 영			
공인명	학 동 장 의 인		공인명	학 동 장 의 인		

◎마포구공고제 17 호

도시계획사업(시장)공사완료

- 1. 마포구고시 제 1 호 ('87.3.28)로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된 마포구서교동 357-1 호 소매시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법 제 85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산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마포구 서교동 357-1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소매시장 신축공사
- 다. 사업의규모  
대지면적 2,644.6㎡, 건축면적 1,314.24㎡  
건축면적 12,640.59㎡ (시장면적 3,298.61㎡)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 1가 181-1. (주)부성건설 대표 성부중
- 마.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착공일: 1987. 11. 1
  - 준공일: 1989. 2. 3

◎노원구공고제 34 호

















관인개각승인및폐인공고(안)

서울특별시노원구 관인규칙 제 2.3.5 조에 의거, 월계 1 등의 5 개 동장직인 및 폐인을 개각 사용 승인하고 동규칙 제 6 조에 의거, 기사용중인 관인을 폐인 조치하고, 동규칙 제 8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9. 2.

노 원 구 청 장

- 가. 관인사용개시일시: 1989.3.2 09:00
- 나. 관인개각기관 및 관인명
  - 월계 1 동장 및 폐인 (일반, 민원사무용)
  - 월계 2 동장 및 폐인 (일반, 민원사무용)
  - 공릉 1 동장 및 폐인 (일반, 민원사무용)
  - 상계 2 동장 및 폐인 (일반, 민원사무용)
  - 상계 5 동장 및 폐인 (민원사무용)
  - 상계 6 동장 및 폐인 ( )
- 다. 개각관인인명: 불임

관 인 개 각 인 영 부				
구 분 동 별	개 각 인			
	일 반 사 무 용		민 원 사 무 용	
	직 인	개 인	직 인	개 인
월 계 1 동 장				
월 계 2 동 장				
공 릉 1 동 장				
상 계 2 동 장				





◎ 1989년 2월 9일자		6 급 이하 공무원 전보 및 파견		형제 54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수남	동대문구	용산구	지방행정주사	
최창제	세무지도과	마포구	"	
김정배	성북구	을림피관리담당관	"	
조신익	서초구	"	"	
김기동	건설행정과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태백	종로구	구로구	지방행정서기	
이상택	문화담당관 파견해제	도봉구	"	
이혁구	중랑구	주택개발과	지방행정주사	
이두규	운수2과	중구	지방행정주사보	
김기학	주택기획과 파견해제 회계과파견('89.2.9-12.31)	서초구	"	
신상균	종로구	전자계산소	지방행정서기	
김진수	중구	"	"	
윤철호	건설행정과파견('89.2.9-12.31)	구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윤유중	교통관리사업소파견 ( '89.2.9-'89.12.31)	관악구	"	
이종구	주택기획과(도시개발공사요원) 파견('89.2.9-'89.3.31)	회계과	"	
곽상욱	주택기획과(도시개발공사창설 요원)파견해제	주택기획과	지방행정주사	
원성수	주택기획과 파견해제 구로구 근무	관악구	지방행정주사보	
박희오	성동구	서울대공원관리(사)	지방행정서기	
김용덕	녹지사업소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김동규	행정과(종합상황실장요원)	보험연금과	"	
손일숙	양천구파견('89.2.9-별도기시 까지)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수영	서초구	시립운동장	지방행정주사	
신동원	도봉구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노태식	강서구	한강관리(사)	지방행정서기
최명규	서초구	구로구	"
김규심	노원구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원배수	보림연급과	"	지방행정주사보
인사발령통지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장 (4급상당)에 임함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도로과 전기과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령제 55 호 도로과 함승진 '89.2.10 대통령
© 1989년 2월 9일자 기능직공무원면직령제 56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은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소방본부	지방전기원 (8등급)
© 1989년 2월 10일자 6급이하기술직공무원나견해제령제 57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동열	주택기획과 파견 해제	도시개발과	지방토목기사
이규당	"	올림픽건축담당관	지방건축기사
기술직공무원승진임용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박종두	도로과 지방토목기사	도로과	지방토목기사보
김남구	"	"	"
© 1989년 2월 11일자 9급공무원파견령제 59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조승근	공무원교육원 파견 ( '89.2.11 ~ '89.3.10 )	용산구	지방행정서기보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명하	공무원교육원 파견 ( '89.2.11-'89.3.10 )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진관	"	강남구	"
<b>인사발령통지</b> <span style="float: right;">명제 60호</span>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이사관 <span style="margin-left: 100px;">이재환</span>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span style="float: right;">'89.2.10</span> <span style="float: right;">대통령</span>			
1989년 2월 10일자 <b>신하단체임원일동</b> <span style="float: right;">명제 61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이재환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임함 ( '89.2.10-'92.2.9 )	신규	
1989년 2월 15일 <b>6급이하공무원전보및파견</b> <span style="float: right;">명제 62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상기	송파구	울림킷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이균도	동작구	"	"
신경성	자동차관리사업소	"	"
박상오	시립대학교	울림킷토목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변길탁	송파구	인사과	지방행정서기
이운수	종합민원실 (지민불전신고센터요원) 파견 ('89.2.15-별도지시시까지)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유희동	"	서초구	지방행정서기
1989년 2월 14일자 <b>6급이하공무원면직</b> <span style="float: right;">명제 63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전양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무과	별정직 6급상당
이종구	"	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 1989년 2월 15일자 6급이하공무원면직령제 64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지규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문화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관호	"	"	"
이수학	"	교통기획과	지방행정주사보
홍민수	"	비상계획과	"
박종윤	"	총무과	지방행정서기
김순일	"	전자계산소	지방별정 6급 상당
◎ 1989년 2월 16일자 지방별정직 8급이하공무원면직령제 6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재호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전자계산소	지방별정직 8급 상당
최병대	"	경찰국면허과	지방별정직 9급 상당
◎ 1989년 2월 15일자 4급공무원과견해제령제 6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박인용	국무총리서실(차관총합대책반)과견해제	내무국	지방서기관
◎ 1989년 2월 16일자 6급기술직공무원과견제령제 6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안현석	정부합동민원실과견('89.2.16-'89.7.31)	내무국	지방건축기사
◎ 1989년 2월 15일자 6급이하공무원면직령제 6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홍순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도로과	지방토목기사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현규	원예 의하여 그직을 면함	시설제과과	지방토목기사보
전경준	"	복부건설사업소	"
문학기	"	도시계획과	"
이영덕	"	교통기획과	"
조중원	"	기술심사담당관실	지방건축기사
오준엽	"	건설생활과	"
장영준	"	문화담당관	"
전동호	"	올림픽건축담당관	"
조경래	"	건설행거과	지방기계기사
이영수	"	건축지도과	"
변종훈	"	대천산매수지사부소	지방기계기사보
강영희	"	수원기건과	지방기계기원
이준규	"	도로과	지방전기기사
인은환	"	지적과	지방지적기사보

**인 사 발령 통 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장 지방이사관 배병호 이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 보함 '89.2.17 대통령령	형제 69 호 내부부 인강위본부 소방국 예방과 행정사무관 백형찬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89.2.17 대통령령
---	--

1989년 2월 17일자 2, 3 급 공무원 전보 형제 7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두영	세종문화회관장	공보관	지방부이사관
반중남	공보관	종로구부구청장	"

1989년 2월 21일자 지방별정직 6 급이하공무원면직 형제 7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병일	원예 의하여 그직을 면함	총무과	별정직 6급상당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완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주책개량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김영은	"	통계담당관	지방별정직 9급상당
◎ 1989년 2월 21일자 지방별정직 6급이하공무원임용			명제 72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영일	인사과 인력진단전(10호봉)	지방별정직 6급상당	신규
김완규	주책개량과 관독사(8호봉)	"	"
박영석	비상제외과 비상대비인력(5호봉)	"	"
김영은	통계담당관 전산처리사(2호봉)	지방별정직 8급상당	"
◎ 1989년 2월 23일자 4급공무원파견			명제 7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한상건	서울시설관리공단 파견	은행구재무국장	지방서기관
3급공무원승진			명제 74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두기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에 보함	산업경제국	서기관
3급공무원전보			명제 7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승걸	중토구 부구청장	서초구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김병주	은평구 부구청장	교통관리사업소장	"
김창근	서초구 부구청장	은평구부구청장	"
이호조	교통관리사업소장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

◎ 1989년 2월 28일자 고 용 직 공 무 원 전 입				병제 7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가 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한 내무국 근무권 영함	사회정책위원회	고용직(방호원)	
◎ 1989년 3월 2일자 지 방 고 용 직 공 무 원 전 보				병제 7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철 경	시립대학교	내무국	지방타자원	
서울특별시장				